

II. '99년도에 변화하는 주요 환경법규

■ 자연환경관리분야

- 습지보전지역 지정관리 및 행위제한 신설 : 습지보전법 제 8조, 13조, 15조
 - (신설)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
 - (신설) 습지보전지역내에서 건축물 신축 및 증축을 제한하고 흙·모래·자갈 등 골재채취 금지
 - (신설) 습지보전지역의 경우 습지의 보호·관리를 위하여 일부 출입을 제한
- 공유수면매립 및 골재채취 금지 : 습지보전법 제 16조
 - (신설) 습지보전지역 내에서 공익상·군사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골재채취허가 불가
- 습지훼손에 대한 벌칙 : 습지보전법 제23조, 제24조
 - (신설) 습지보전지역 내에서 습지를 매립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
 - (신설)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환경영향평가 평가대행자의 평가서 작성 대행금지제도 폐지 ('99년 1월 예정) : 환경영향평가법 제 10조
 - (폐지)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사업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평가서 작성대행 금지
-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요건 완화 :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시행규칙제5조
 - (변경)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
 - (변경) 기술인력요건을 12인 이상에서 11인 이상으로 하고, 실험실 면적기준 (50m²)을 삭제
- 토양오염관련 법규 완화
 - 정기검사와 별도의 토양오염 수시검사 면제요건 완화 :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사용종료, 폐쇄 또는 교체하는 경우 수시검사 면제

■ 대기관리분야

- 저황유사용 지역 확대 :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, 청정연료사용등에 관한 고시
 - 전국 (1.0% 및 0.5% 중유공급 - 사용지역 제외)에 4% 이하 중유사용 → 1% 이하 저황중유 사용
 - 대전·광주 등 37개시·군에 1.0% 이하 저황중유 사용 → 0.5% 이하 저황중유 사용
- 청정연료사용지역 확대
 - 울산등 12개시의 25평이상 아파트와 0.5톤이상 보일러에 청정연료 사용 → 울산 등 12개시의 18평이상 25평미만 아파트와 0.2톤 이상 0.5톤 미만 보일러에 청정연료 사용
 - 25평이상 아파트와 0.5톤이상 보일러에 1.0%이하 저황중유 사용 → 김해, 구미 등 6개시와 25평이상 아파트와 0.5톤이상 보일러에 청정연료 사용
- ◎ 대기환경기준 강화 ('99 하반기 예정) :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2조
 - 아황산가스
 - 0.25ppm/1시간 → 0.12ppm/시간
 - 0.14ppm/24시간 → 0.04ppm/24시간
 - 0.03ppm/년 → 0.015ppm/년
 - 미세먼지
 - 80 $\mu\text{g}/\text{m}^3 \cdot \text{년}$ → 70 $\mu\text{g}/\text{m}^3 \cdot \text{년}$
 - 납
 - 1.5 $\mu\text{g}/\text{m}^3 \cdot 3\text{개월}$ → 0.5 $\mu\text{g}/\text{m}^3 \cdot 3\text{개월}$
-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의무조항 폐지
 - (폐지) 특정유해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환경상 위해정도가 큰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
- 자가방지시설 설계·시공시에는 기술능력 구비조건 폐지 :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2조
 - (폐지) 자가방지시설 설계·시공시에는 기술능력을 갖추도록 함
- 배출시설 재허가 금지조항 폐지 :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
 - (폐지)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1년간 배출시설의 재허가 금지

- 자가측정 기록부 폐지 :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46조 및 별표12, 별표13
 -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가측정 또는 위탁측정하고 그결과를 기록·보존토록 함
 - 방지시설 운영일지와 통합
- ◎ 대기환경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추진 :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2
 - (신설)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신고('99년 6월까지)하고,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함
- 대기환경규제지역내 자동차 정기검사 강화 :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2
 -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정기검사를 보통 2년에 1회 실시
 -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시·도지사가 조례로 차종별 검사주기 및 검사방법을 별도로 정함
- 소음·진동 시설의 이전명령제도 폐지 : 소음진동규제법 제 17조
 - (폐지)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그 공장의 이전을 명함

■ 수질·상하수도 관리분야

-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토지매수제도 도입 (7월 예정) :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
 - (신설)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토지를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고나한법률에 의한 수매가격으로 매수
-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: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
 - (신설) 수도사업자가 한강수계에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·징수
- 배출시설 재설치 허가·신고 제한제도 폐지 :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
 - (폐지) 사위 등의 방법으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·폐쇄·조업정지를 명하고 1년간 동일장소에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
- 복토·삭토 등 농경지 등의 오염방지제도 폐지 (7월 예정) : 수질환경보전법 제45조 및 제46조

- (폐지) 농경지 등이 오염된 경우에는 복토·삭토 등의 조치를 하고 농수산물 재배를 제한하거나 수거·폐기케 함
-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가측정 기록·보전 의무 (7월 예정) : 수질환경보전법 제22조
 -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2년간 기록·보전하여야 함
 - 임의규정(권장사항)으로 완화
- 폐수의 종말처리시설 유입 사전승인 폐지 :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
 - (폐지)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할 사업장에서 자체 처리하여 직접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
-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방법 개선 :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고시
 - 1회 채취한 시료의 검사결과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
 -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 1회 채취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판단
- 상수원보호지역 차량통행 제한 :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
 - (신설)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유류, 유해화학물질 등의 수송차량의 통행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
-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상향 조정 :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14조
 - 폐수를 자체처리하지 아니하고 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폐수량은 1일 10m³ 이내일 경우임
 - 처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폐수량을 20m³으로 상향조정
- 방지시설업등 등록기준 완화 :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, 제59조, 제63조
 - (폐지) 방지시설업, 폐수처리업, 측정대행업의 등록시 일정규모의 사무실, 실험실 및 실험장비를 보유토록 함
- 특별대책지역등에 가축의 사육제한 범위 확대 :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34조
 -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
 - 특별대책지역등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
- 배출설비준공 검사제도 도입 : 하수도법 제24조

- (신설) 배수설비의 오접합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도 도입
-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제도 : 하수도법 제24조
 - 모든 폐수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 의무
 -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는 공공하수도에 유입 제외 허용

■ 폐기물관리분야

- 폐기물처리경로의 투명성 제고 (7월 예정) ; 폐기물관리법 제25조
 - 배출자 신고제도
 - 6대전표
 - 폐기물처리실적 보고제도
 -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선진국 방식의 처리증명제 도입
 - 배출시 폐기물처리계획서, 폐기물분석결과서 및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제출
 - 처리시 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 제출
 - 연말정산시 폐기물정산서 제출
 - 폐기물인계서 미작성 또는 허위기재시 폐기물 인계서의 사전 검인,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위탁
-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 도입 (7월 예정) : 폐기물관리법 제43조
 - (신설) 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
 - ①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
 - ② 보험가입
 - ③ 폐기물처리이행 보증금 사전예치중 택일
-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벌칙 신설 : 폐기물관리법 제 58조
 - (신설)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·매립 : 징역 7년, 벌금 5천만원
 - (신설)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: 1억이하
 - (신설) 폐기물 부적정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 : 징역 2년, 벌금 1천만원
- 건설폐기물 장거리이동 폐기물 처리증명 제도 도입 (7월 예정) : 폐기물관리법 25조
 - (신설) 건설폐기물 및 장거리 이동 폐기물은 배출·운반 또는 처리시마다 “폐기물간이인계서, 폐기물인계서”에 의한 증명제도 도입
- 폐기물처리업 통합 (7월 예정) : 폐기물관리법 26조

- 수집·운반업, 중간처리업, 재생처리업, 최종처리업, 종합처리업
→ 재생처리업은 중간처리업에 통합
- 과대포장 상품검사 명령제 도입 (7월 예정)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
 - (신설)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저오디는 경우 포장공간비율·재질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 결과를 제출토록 명령
- 주민지원 자금조성 재원 추가 (7월 예정) : 폐기물처리시설축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
 - 시설설치시 환경부장관의 준공인가후 사용
→ 다른 지자체 폐기물 반입시 출연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 확대 및 광역화 유도
- 지정부산물에 건축폐목재 추가 (1월 예정)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
 - 부산물중 재활용이 특히 필요한 지정부산물로 철강슬래그, 석탄재, 토사·콘크리트, 아스팔트콘크리트·벽돌을 지정
→ 지정부산물로 철강슬래그 등 외에 건축폐목재를 추가
-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 및 지원제도 도입 (1월 예정)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의2
 - (신설)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부가 이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
-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확대 (1월 예정) :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
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
→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대상 공공기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 외에 정부출자기관, 재투자기관 등을 추가
- 유독물관리자의 이전명령 폐지 (4월 예정) :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
 - (폐지) 유독물사업장이 인근주민에 피해우려시 그 사업장을 이전명령토록 하고 있음
- 유독물관리자 선임신고 폐지 (4월 예정) :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
 - (폐지)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함
- 가스상유독물시설의 자체검사의무 폐지 (4월 예정) : 유해화학물질관리법

제 31조

- (폐지) 가스상유독물영업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함

■ 기타

-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완화 (1월 예정) :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12
 -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기기 취득일로부터 매 1년마다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
 - 신규장비에 대해서는 최초의 정도검사에 한하여 정도검사기간을 2년으로 연장 (자동차분야 제외) 하고, 측정기기사용자가 기기의 정상가동여부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정도검사기한전에 정도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정기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

우석훈 (현대환경연구원 수석연구원)